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.

발 의 자 : 우재준 · 조지연 · 서천호
김기현 · 고동진 · 김위상
김소희 · 강명구 · 김태호
김형동 · 진종오 · 구자근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친환경자동차법”이라 함)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.

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2호의4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102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

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2호의4 중 “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(이하 “전기자동차”라 한다)”를 “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(이하 “전기자동차등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2호의6다목 중 “전기자동차”를 “전기자동차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5제3항 중 “전기자동차에”를 “전기자동차등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12의3. (생 략)	1. ~ 12의3. (현행과 같음)
12의4. “전기자동차충전사업”이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(이하 “전기자동차”라 한다)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	12의4. ----- ----- ----- ----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전기이륜자동차(이하 “전기자동차등”이라 한다)--- ----- -----.
12의5. (생 략)	12의5. (현행과 같음)
12의6. “소규모전력중개사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(이하 “소규모전력자원”이라 한다)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	12의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	다. ----- -----전기자동차등

12의7. ~ 21. (생 략) 제16조의5(재 생에너 지전기공급사 업자 등의 전기공급) ①·② (생 략)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 생에너 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 니하고 <u>전기자동차에</u> 공급할 수 있다. ④ ~ ⑥ (생 략)	12의7. ~ 21. (현행과 같음) 제16조의5(재 생에너 지전기공급사 업자 등의 전기공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전기자동</u> <u>차등에</u>-----.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--	--